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867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2209402)	2025.03.27.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5. 7. 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 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양부남의원 (2210881)	2025.06.17.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 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 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이달희의원 (2210886)	2025.06.17.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 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 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박희승의원 (2211557)	2025.07.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9.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 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18.)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현행 어린이놀이기구 외에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2조 제2호).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함(안 제2조제3호 가목)
-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31조제2항제3호 신설).
- 라. 어린이놀이기구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 마.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놀이터로서”를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를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로, “위험요인을”을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안전성평가”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
가 또는”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받기”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
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를 “제11조제1항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주체는”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의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용한”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
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1조의”를 “제11조제1항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을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으로,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신고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기구”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u>놀이터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 ----- <u>놀이터, 또는</u> <u>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u> <u>선</u> ----- -----.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 ----- ----- -----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기구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유치원</u>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가. ----- ----- ----- ----- <u>유치원, 같은 법</u> <u>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u>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
하는 경우

나. (생 략)

4.·5. (생 략)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
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
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
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의2. (생 략)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
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
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
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홍원 및-----

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6.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
이시설의-----

-----.

6의2. (현행과 같음)

7. -----함은 어린
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관
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
이시설의-----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
-----.

7의2. “안전성평가”라 함은 어
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

	<u>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u>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u> 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u>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u>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의2. <u>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u> ----- ----- ----- <u>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u>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자
(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
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
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
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
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
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어린이놀이기구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
라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
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① -----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기구의 신고)

① -----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

② · ③ (생략)

제12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기구를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 등) ① -----제11조제1항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① -----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설치된-----

-----.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1조제1항의-----

-----.

③ · ⑤ (생략)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

②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